

회비규정

한국보험계리사회 내규 제6호

제 정 2014. 6. 10.

전 문 개 정 2016. 9. 7.

최 종 개 정 2018. 3. 2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보험계리사회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 정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의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비의 종류와 금액) ① 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입회금
2. 개인연간회비
3. 법인연간회비
4. 종신회비 <개정 2016. 9. 7>
5. 특별회비

② 회원이 납부할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3조(회비의 납부대상)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납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회금: 정관에 의하여 본회에 입회하는 자 (명예회원을 제외한다)
2. 개인연간회비 : 정회원, 준회원<개정 2014.6.10. 전문회원, 특별회원 삭제>
3. 법인연간회비 : 법인회원
4. 종신회비: 개인연간회비 대상자 <개정 2016. 9. 7>
5. 특별회비: 본회의 특별한 사업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

의결에 의거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 다만, 회원이 장학사업등 이 회의 사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특별회비에 포함한다.

제4조(회비의 납부기한) 회비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입회금: 이 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
2. 개인연회비: 매년 6월 30일 <개정 2016. 9. 7>
3. 법인연회비: 매년 6월 30일 <개정 2016. 9. 7>

제5조(미납에 대한 조치) ① 본회는 매년 1월 1일 현재 전년도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회원(이하 “미납회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조치한다.

② 미납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치한다.

1. 회원 총회 표결권(개의 포함) 정지 <개정 2018. 3. 21>
2. 임원의 피선거권 정지(정회원에 한한다.)
3.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

③ 본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일로부터 1월전까지 미납 회원에게 조치예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의 대상이 되는 미납회원이 조치일 현재 해당 미납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9. 7>

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미납회원이 해당 미납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그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해제한다. <개정 2016. 9. 7>

제6조(회비에 관한 특례)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연간회비에 대하여 당해 회원이 휴업(퇴직)사실을 증명하거나,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개인연간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업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개인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7>

제7조(회비금액의 결정) 회비금액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사

회에서 결정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(적용특례) 제2조 제1항 제1호, 제3조 제1호, 제4조 제1호는 시행일 현재 적용을 유보하고, 향후 회장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일 등을 향후 결정한다.